

수 의 계 약 사 유 서

1. 건 명 : 종합안내소 이전 및 임대공간 시설물 철거
2. 적용법규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
 - 재단 예산관리규정 제73조 5항
3. 수의계약 사유
 - 재단 예산관리규정 제73조 5항에 의거 수의계약 충족
 - DDP 종합안내소의 임대운영과 시설물의 철거 및 디지털미디어의 용도 변경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계약하고자 함.

2017. 02.

작성자 : DDP경영단 운영본부 운영팀 윤 여 상 (인)

확인자 : DDP경영단 운영본부 운영팀장 김 국 환 (인)